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5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진성준·조계원·이재관

허 영 · 민병덕 · 이연희

강선우 · 김윤덕 · 박상혁

위성곤・황정아・조 국

김주영 · 김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본문 중 "18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으로, "상정되어야 한다"를 "상정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	③
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u>180일</u>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	<u>60일</u>
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	
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u>15일</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6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u>날부</u>	날 이
<u>터 60일 이내에</u> 본회의에 <u>상정</u>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되어야 한다.	<u>상정된다</u> .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	<u><</u> 삭 제>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u>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u>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